

한국정보과학회 기금관리운영규칙

1982년 4월 11일 제정

2005년 11월 11일 개정

2011년 11월 30일 개정

제 1 조(목적)

본 규칙은 학회의 고정자산 취득과 특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확보, 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(시행)

기금은 학회운영을 위하여 편성되는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선정, 모금기간 등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.

제 3 조(수입)

기금은 다음을 수입원으로 한다.

- 1) 회원의 종신회비
- 2) 회계연도 종료시 회원의 종신회비를 제외한 당기 이익잉여금 중 회장과 차기회장이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합의한 지분
- 3) 기금적립을 목적으로 한 기부금
- 4) 기타

제 4 조(지출)

- 1) 기금의 지출은 이사회 결의로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2) 기금의 운영 이익(이자,투자이익)은 발생년도의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 5 조(운영)

- 1) 기금은 재무담당 이사가 관장하여 은행의 신탁 및 정기예금 등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적치하여야 한다.
- 2) 기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장, 통장(또는 증서)는 총무담당 이사가 보관하여야 한다.
- 3) 기금 조성 상태는 6개월마다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산서에 적립금으로 표기한다.